



제 422회 국회 (임시회)
제2차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경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조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5487호)

2025. 2.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문위원 임재금

목 차

I. 제안경위	1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검토의견	4
1. 해양경비정보의 범위 등 정의 마련	4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근거 마련 등	7
3.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금지물품 수송 의심 선박등’ 을 추가 ·	10
4. 정보 제공 등 협조 요청받은 기관의 제출 의무 부여	14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조경태 등 10인

2. 제 안 일 : 2024. 11. 12.

3. 회 부 일 : 2024. 11. 13.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급변하는 해양환경 변화와 우리해역 내 주변국 관공선 및 불법조업 외국어선의 빈번한 출현, 해양사고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과 같이 해양에서의 안보, 안전, 자원 확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지속적인 위협이 발생함에 따라 해양경비 수요와 그로 인한 사회적·경제적 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특히, 대한민국은 독도 등 주변국가와 해양영토 갈등, 불법조업 외국어선으로 인한 수산자원 감소, 대형 재난사고로 인한 대규모 인명피해 등 종합적인 해양 치안수요는 매우 높은 편이며, 해양에서의 주권 수호와 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들의 눈높이도 매우 높아졌음.

현재 저강도·비군사적 해양위협은 물론 해양사고 발생 시 해양법

집행기관인 해양경찰청을 중심으로 대응하고 있으나, 광활한 관할 해역을 고려할 때 부족한 해양경찰 경비세력을 활용한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이 요구됨.

이에 각종 해양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안보·안전 등과 관련된 각종 해양경비정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해경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한편, 국제적으로 수송이 금지된 물품 또는 위험물 등을 운송하는 선박이 우리 영해를 항해하는 경우, 해양안보와 공공질서에 위협을 초래하는 만큼 금지물품 수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으로 확대하여 UN회원국으로서 국제평화와 안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전략적인 해양경비 활동을 위해 수집·분석이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마련함(안 제2조제12호).

나. 현행 「해양경비법」은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제19조)하고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정보 제공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실질적인 협조를 받는 데 한계가 발생함에 따라 본조 후단에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에 대해 해양경찰청장이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 상대기관의 제출 의무를 부여함(안

제7조의2 신설).

다.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국가로서 공공질서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기여하기 위하여 금지물품의 이송이 의심되는 선박 등을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추가함(안 제12조제1항제2호, 제13조제3호).

Ⅲ. 검토의견

1. 해양경비정보의 범위 등 정의 마련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의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구체적으로 나열하여 그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2호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11.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11. (현행과 같음) <u>12. “해양경비정보”란 해양경비를 위하여</u> <u>필요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u> <u>당하는 정보를 말한다.</u> <u>가. 경비수역 및 경비세력 등에 관한 정보</u> <u>나. 선박등의 위치, 출·입항, 승선원 및</u> <u>화물 등 선박등의 운항에 관한 정보</u> <u>다. 해양시설, 임해 중요시설 및 선박등</u> <u>의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u> <u>라. 해양에서 수집한 영상·음성·음향</u> <u>· 전기통신데이터 또는 이들의 조합</u> <u>으로 처리·가공·활용된 정보</u> <u>마. 수심·조류·해양기상 등 해양 특성</u> <u>과 해저자원, 해양수산자원 등에 관</u> <u>한 정보</u> <u>바.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u> <u>사. 가목부터 바목까지의 정보를 결합·</u> <u>융합·분석·가공하여 생성된 정보</u>

현행법상 해양경비는 해양안보, 해상치안, 해양재난 예방 및 대응,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 등 국민의 안전과 국익에 직결된 다양한 업무를 포함하고 있는바, 해양경비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해양경비 업무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수집·분석하여 활용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는 ‘해양경비정보’에 대한 정의나 구체적인 범위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필요한 정보의 범위가 불명확하고 정보수집의 오남용 우려가 제기되는 한편, 체계적인 정보 관리에도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개정안은 해양경비정보의 종류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해양경비정보의 체계적인 관리 및 분석을 가능하게 하고 효율적인 해양경비 활동을 지원하려는 취지로 입법의 필요성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다만, 개정안에서 해양경비정보를 ‘해양경비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로 정의하고 있는바, 이는 장소적 기준 없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양경찰청의 해양경비정보 수집 범위가 제한 없이 확대될 우려가 있으므로, 해양경비법의 목적¹⁾ 규정에 맞추어 ‘경비수역 내의 정보’로 한정할 필요가 있음.

또한 안 제2조제12호 나목의 ‘선박 등의 운항에 관한 정보’와 같은 호 다목의 ‘선박등의 보안·안전에 관한 정보’는 그 범위가 중복되는 것

1) 제1조(목적) 이 법은 경비수역에서의 해양안보 확보, 치안질서 유지,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 보호를 위하여 해양경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과 공공질서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으로 보이므로, 나목을 ‘선박등의 운항·보안·안전에 관한 정보’로 수정하고 다목에서 ‘선박등’을 삭제하여 시설의 안전·보안에 관한 내용으로 한정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됨.

2.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근거 마련 등

개정안은 해양경찰청장이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분석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이를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7조의2(해양경비정보의 수집 등) ①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 활동에 필요한 해양경비정보를 수집·관리 및 활용할 수 있다. ② 해양경찰청장은 제1항에 따라 해양경비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그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집하여야 하며, 수집된 정보는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해양경찰청장은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및 분석을 위하여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다. ④ 해양경찰청장은 제3항에 따른 해양경비정보시스템 구축·운영과 관련하여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한 경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해양경비정보의 수집·관리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최근 우리 해역 내 주변국 관공선 및 불법조업 어선 출현 등 해양안보, 자원확보 등에 위협을 초래하는 상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

으나 광활한 관할 해역에 비하여 해양경찰 경비세력이 부족하므로, 각종 해양 위협 상황을 사전에 예측하고, 예측된 정보를 토대로 경비세력을 선제적으로 배치·대응하기 위하여 다양하고 방대한 해양경비 관련 정보를 수집·관리·융합·분석할 필요가 있음.²⁾

이에 개정안은 해양경비 업무와 관련한 정보를 적시에 수집하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동시에 정보 수집과 활용에서의 오·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분석·활용할 수 있는 해양경비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려는 것으로 해양주권 수호를 위한 관리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고, 수집 정보의 효율적 관리 및 활용성을 높이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다만, 개정안에서 해양경비정보는 해양주권과 국민의 안전에 직결되는 민감정보로서 기밀성이 높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바, 비밀누설에 대한 처벌 규정 마련에 대한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공무원의 비밀누설에 대하여는 형법 제127조³⁾에 따른 공무상 비밀누설죄(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할 수 있는데, 이보다 더 중한 처벌이 필요한 경우에는 이 법에서 별도의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참고로,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2) 참고로 해양경찰청은 개정안 제7조의2와 관련하여 ‘인공지능(AI) 기반의 해양경비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 전략 계획(ISP,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을 수립하였으며[‘인공지능(AI) 기반의 해양경비 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 전략(ISP)’, 수립기간: 2021년 3월~6월(3개월), 수립예산: 4,750만원], 이를 기반으로 시스템 개발사업(‘22~’26년)을 추진하고 있음.

3)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의 누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에서는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업무에 종사한 자가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 형법상 비밀누설죄보다 높은 형량을 규정하고 있음.⁴⁾

안 제7조의2제4항에서는 해양경비정보를 다루는 정보시스템의 운영을 외부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여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해당 정보를 취급할 수 있는바, 이들의 비밀누설에 대하여 형법 제127조에 따른 직무상 비밀누설죄로 처벌하려는 경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신설할 필요가 있음.

4)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비밀유지의 의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 직무에 종사하였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 제7조에 따른 정보화책임관

2. 제19조에 따라 국방정보자원의 관리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

제28조(벌칙) 제2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3. 해상검문검색 및 나포 대상에 ‘금지물품 수송 의심 선박등⁵⁾’ 을 추가

개정안은 해양경찰관이 해양경비⁶⁾ 활동 중에 해상검문검색과 추적·나포(拿捕)할 수 있는 대상에 ‘금지물품 수송 의심 선박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 및 제13조).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해양경찰관은 해양경비 활동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주위의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해상검문검색을 실시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은 대한민국이 체결·비준한 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실시한다.	제12조(해상검문검색) ① ----- -----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대량파괴무기나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u>	2. <u>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대량파괴무기, --- 무기류나 관련 물자 또는 금지 물품</u> -----

5) “선박등”이란 「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 「수상레저안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수상레저기구, 「어선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어선, 그 밖에 수상에서 사람이 탑승하여 이동 가능한 기구를 말한다.(현행법 제2조제10호)

6) “해양경비”란 해양경찰청장이 경비수역에서 해양주권의 수호를 목적으로 행하는 해양안보 및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의 보호를 위한 경찰권의 행사를 말한다.(현행법 제2조제1호)

제13조(추적·나포) 해양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선박등에 대하여 추적·나 포(拿捕)할 수 있다. 다만, 외국선 박에 대한 추적권의 행사는 「해 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제 111조 ⁷⁾ 에 따른다. 1.·2. (생 략) <u><신 설></u>	제13조(추적·나포) ----- ----- ----- -----. ----- ----- -----. 1.·2. (현행과 같음) <u>3.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 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 등</u>
--	---

현행법은 해양치안의 확보, 해양수산자원 및 해양시설을 보호하기 위
하여 다른 선박의 항행 안전에 지장을 주거나 대량파괴무기, 그 밖의
무기류 또는 관련 물자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등에

7)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 협약」 (UNCLOS) 제111조 추적권

1. 외국선박에 대한 추적은 연안국의 권한있는 당국이 그 선박이 자국의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을 때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추적은 외국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이 추적국의 내수·군도수역·영해 또는 접속수역에 있을 때 시작되고 또한 추적이 중단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영해나 접속수역 밖으로 계속될 수 있다. 영해나 접속수역에 있는 외국선박이 정선명령을 받았을 때 정선명령을 한 선박은 반드시 영해나 접속수역에 있어야 할 필요는 없다. 외국선박이 제33조에 정의된 접속수역에 있을 경우 추적은 그 수역을 설정함으로써 보호하려는 권리가 침해되는 경우에 한하여 행할 수 있다.
2. 추적권은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대륙붕시설 주변의 안전수역 포함)에서 이 협약에 따라 배타적경제수역이나 대륙붕(이러한 안전수역 포함)에 적용될 수 있는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준용한다.
3. 추적권은 추적당하는 선박이 그 국적국 또는 제3국의 영해에 들어감과 동시에 소멸한다.
4. 추적당하는 선박이나 그 선박의 보조선이 또는 추적당하는 선박을 모선으로 사용하면서 한 선단을 형성하여 활동하는 그 밖의 보조선이 영해의 한계 내에 있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접속수역·배타적경제수역 한계내에 또는 대륙붕 상부에 있다는 사실을 추적선박이 이용가능한 실제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한, 추적은 시작된 것으로 인정되지 아니한다. 추적은 시각이나 음향 정선신호가 외국선박이 보거나 들을 수 있는 거리에서 발신된 후 비로소 이를 시작할 수 있다.
5. 추적권은 군함·군용항공기 또는 정부업무에 사용중인 것으로 명백히 표시되어 식별이 가능하며 그러한 권한이 부여된 그 밖의 선박이나 항공기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대하여 정선(停船) 요구, 승선(乘船), 질문, 사실 확인, 선체(船體) 수색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제12조), 해상검문검색에 따르지 아니하고 도주할 경우에는 추적·나포할 수 있도록 규정(제13조)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유엔 회원국들은 UN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397호⁸⁾ 등에 따라 국제적으로 수출입이 제한되는 ‘금지물품’을 운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을 검문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으나 현행법에는 UN 안전보장 이사회 결의상 의무를 뒷받침할 구체적 법적 근거가 미흡하여 금지물품 운송 선박에 대한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나포와 같은 적극적인 대응이 어려운 상황임.⁹⁾

이에 개정안은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대북제재 물품을 수송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에 대해 해상검문검색 및 추적·나포가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국제적 평화와 안보를 위협하는 물품 수송을 사전에 차단하여 우리나라의 해양안보를 강화하고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동참하려는 것임.

참고로, 일본은 북한에 대한 대량살상무기 및 금지물품 수송 관련 국

8) UN 안보리 결의 2397호('17.12.22)에서는 회원국 항구에 입항한 금지행위 연루 의심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토록 의무화하고, 자국 영해내에서도 금지행위 연루 의심 선박을 나포·검색·동결(억류)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고 있음.

해당 선박이 유엔 안보리 결의 및 본 결의에 의해 금지된 활동이나 품목의 이전에 연관되어 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 회원국은 자국 항구 내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해야 하고, 영해 내의 모든 선박을 나포, 검색, 동결(억류)할 수 있다.
("Member States shall seize, inspect, and freeze (impound) any vessel in their ports, and may seize, inspect, and freeze (impound) any vessel subject to its jurisdiction in its territorial waters, if the Member State has reasonable grounds to believe that the vessel was involved in activities, or the transport of items, prohibited by resolutions")

9) 유엔 안보리 결의는 회원국에 대한 구속력을 가지지만, 국내에서의 이행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절차와 기관의 권한을 규정한 법률이 필요함.

제제재 이행을 위해, 일본 국내법으로 이를 뒷받침하고 있음.¹⁰⁾

다만, 해상검문 검색 및 추적·나포의 대상이 되는 ‘금지물품의 수송에 사용되고 있다고 의심되는 선박’의 범위와 대상이 불분명하므로 이를 구체화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금지물품’으로 명확히 표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또한, 안 제12조제1항제2호 및 제13조제3호 중 “국제평화와 안전유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특히 기여하기 위하여”라는 문구는 해상검문검색이나 추적·나포의 대상이 되는 선박을 수식하는 문구로 오인될 수 있으므로 삭제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10) 일본의 화물검사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貨物検査特別措置法) : 유엔안보리 결의 1874호에 따라 북한의 핵 및 미사일 개발과 관련된 물자의 이동을 차단하고, 일본의 독자적인 대북 제재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되었음(2010.5.14. 제정, 2010.7.4. 시행).

4. 정보 제공 등 협조 요청받은 기관의 제출 의무 부여

개정안은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의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안 제19조 후단 신설).

현 행	개 정 안
제19조(협조요청) 해양경찰청장은 제7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 정에 따른 해양경비 활동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 관의 장에게 정보의 제공 등 협 조를 요청할 수 있다. <후단 신 <u>설</u> >	제19조(협조요청) ----- ----- ----- ----- ----- ----- . 이 경우 <u>협조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u> <u>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u> <u>이에 따라야 한다.</u>

현행법은 해양경찰청장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정보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만 명시하고 있고, 요청받은 기관의 정보 제공 협조 의무를 부여하지 않고 있어, 관계 행정기관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정보를 제공받는 데 한계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개정안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보 제공 요청을 받을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도록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해양정보수집의 실효성 강화하려는 것으로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

문 의 처

02)6788-5425

참고1

해양경비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

① 추진근거

- 국정과제(41-2) ‘해양경비정보융합플랫폼(MDA*)’을 통한 해양통제력 강화
- * MDA(Maritime Domain Awareness, 해양영역인식) : “첨단감시자산 활용으로 광범위한 해역을 감시하고 다양한 해양정보를 융합·분석하여 위협요소를 인지·대응하는 체계”

② 구축개요

- 다양한 해양정보의 융합·분석을 통해 해양안보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비·대응할 수 있는 ‘종합 해양정보 관리체계’



③ 구축현황 : '22 ~ '26년 계속사업으로 ISP 기반 시스템 개발

구분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주안점	시스템 설계	기존 데이터 연계	AI 모델링	데이터, AI 확장	현장, 타기관 확대
세부 내용	· AIS, V-pass 등 위치신호 연계 · 다양한 데이터 표준화 작업 · MDA 분석용 기본틀(GIS) 개발	· 전 VTS 레이더 타겟 정보 연계 · 빅데이터 등 내부시스템 연계 · 함정용 경량화 GIS 개발	· 불온선박 탐지 등 AI 모델 구축(6건) · 통계·기상정보 등 데이터 시각화 · 무선전파 데이터 연계 기반작업	· 세계선박정보 연계, 선박위치신호 확장 · 해역·선박 위협 지수 등 AI 강화 · 드론·위성 등 첨단정보 확대	· 함정 등 현장배포 및 최적화 작업 · 자체 위성 정보 연계 기반 구축 · 무선신호 탐지 체계 적용

참고2

유관기관 보유정보 및 시스템 현황

관리기관	보유정보	관리시스템
해수부	◦ 화물선 제원, 출입항정보, 화물정보, 항만시설현황	해운항만물류 정보시스템
	◦ 연근해어선 조업정보(위치, 어획량)	어선조업정보시스템
	◦ 선원정보, 선박등록정보	해운종합정보
	◦ LTE-M 선박 자동출입항신고 정보, 위치정보 ◦ 선박 SOS 조난신호, NAVTEX 정보	E-Nav 서비스
	◦ 실시간 중국어선 운항정보	한중 불법 공동 대응시스템
	◦ 국내·외 어선 불법어선 지도 단속 정보 ◦ 어업지도선 채증한 영상(ENG 영상) 정보 ◦ 어업지도선 R/D에서 추적하는 중국어선 정보	어업관리단 종합정보시스템
	◦ 어업허가 중국어선 제원, 어획량, 조업위치 정보	수산정보통합시스템
기상청	◦ 수온, 파고, 조석, 조류·해류, 등 해양기상관측정보 ◦ 태풍, 지진해일, 너울성파도 등 재난 기상정보	기상자료개방포털
한국해양교통 안전공단	◦ 선박·해구별 해양안전위험도 분석 예측 정보	해양교통 빅데이터플랫폼
	◦ 국내선박 정보(선명, 톤수, 선박번호) 및 도면 정보	선박검사법령정보
국립 해양조사원	◦ 실시간 해양관측정보(해양관측소, 해양과학기지 등) ◦ 마리나, 여객항로, 요트항로, 낚시포인트 ◦ 양식장, 암초, 해저수송관 위치정보 ◦ 기타 해양수산 통계자료	개방海
	◦ 국가해양위성센터 수집 위성 자료	
국립 수산과학원	◦ 수온, 염분, 용존산소 등 어장정보 ◦ 적조속보 및 해파리 속보 ◦ 고래 혼획·좌초 정보	수산연구 정보시스템
해양과학기술원	◦ 국내·외 해양관측위성 분석자료 및 해양조사정보	
항공우주연구원	◦ 아리랑 위성(K2, 3, 3A, 5호) 영상 정보	
지질자원연구원	◦ 해저자원 분포·매장량 등 국가 전략자원 정보	
육군·해병대	◦ 해안감시 R/D기지 획득 정보(R/D 및 영상정보)	
해군	◦ 함정·항공기에서 획득하는 R/D 및 영상 정보, 수 중탐지(SONAR) 정보	KNCCS
공군	◦ 조기경보기·무인기 등을 통해 확보된 해양감시 정보	
경찰청	◦ 울릉도·독도·가거도·제주도 연안감시 R/D 정보	연안감시 R/S
지자체	◦ 해안위험지역 감시 CCTV 자료 등	

참고3

북한 관련 국제연합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

제재대상 국 가	제재결의 (채택일자)	제 재 내 용
북한 (1718 위원회)	결의 1718 (06.10.14)	- o 무기 및 사치품 금수, 화물검색 도입, 제재대상 자산동결 및 여행통제 - o 제재위 설치
	결의 1874 (09.6.12)	- o 무기금수 범위 확대 및 선박·화물 검색 강화 - o 전문가패널 설치(제재위 지원)
	결의 2087 (13.1.22)	- o 제재조치 강화(공해상 의심선박에 대한 검색 강화 기준 마련 추진, ‘catch-all’ 성격의 대북 수출통제 강화, 자산동결 및 여행 금지 대상 확대, 금융제재 확대) - o Trigger 조항(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중대한 조치를 취할 것임을 명시)
	결의 2094 (13.3.7)	- o △금융 △화물 검색 △선박 및 항공기 차단 분야 등에서 새로운 제재 조치를 포함하고, catch-all 등에서 기존 안보리 결의 강화 - o 제재 대상(개인 3명 및 단체 2개) 및 WMD 관련 금수품목 추가 지정 / 사치품 예시 목록(보석류, 요트, 고급 자동차 등) 마련 - o Trigger 조항 강화(북한의 추가 도발시 안보리가 “추가적인 중대한 조치” 예정)
	결의 2270 (16.3.2)	- o 기존 제재 조치 강화(금융 제재 강화, 북한에 대한 전면적 무기 금수, 금지품목 적재 의심 항공기의 회원국 이착륙 및 영공 통과 불허 의무화) - o 신규 제재 조치 도입(제재 회피·위반에 연루된 북한 외교관·정부대표 추방, 제재 대상자 소유·운영 및 불법활동 연루 의심 선박 회원국 입항금지, 석탄 수출금지 및 항공유 판매·공급 금지) - o 제재 대상 확대(단체 12개, 개인 16명 추가 지정)
	결의 2321 (16.11.30)	- o WMD 및 재래식 무기 금수 강화(북한과의 과학·기술 협력 금지 등) - o 석탄 수출 상한제, 수출금지 광물 추가(은, 동, 아연, 니켈), 조형물(statue), 신규 헬리콥터, 선박 수출 금지 - o 해운·항공 운송 제재 강화 및 차단 조치 강화(북한에 대한 항공기·선박 대여 및 승무원 제공 금지 등, 북한행발 여행용 수하물 검색 의무 명시 등) - o 회원국 금융기관의 북한내 사무소·은행계좌 개설 등 활동 금지 및 90일내 기존 사무소·계좌 폐쇄, - o 제재 대상 확대(개인 11명, 단체 10개)

제재대상 국 가	제재결의 (채택일자)	제 재 내 용
		o 회원국내 북한 공관 인력 규모 감축 촉구, 회원국내 북한 공관·공관원 개설 은행 계좌(1개) 제한, 북한 공관의 소유 부동산 임대를 통한 수익 창출 금지 등
	결의 2356 (17.6.2)	o 제재 대상(개인 14명 및 단체 4개) 추가 지정
	결의 2371 (17.8.5)	o 북한 석탄·철·철광석 수출 전면 금지, 북한 납 및 납광석, 해산물 수출 금지, 회원국들의 북한 해외노동자 고용제한 o 북한제재위에 금지활동과 연관된 선박 지정 권한 부여 o 북한과의 합작사업 신규 추진 및 확대 금지 o 제재 대상 확대(개인 9명, 단체 4개)
	결의 2375 (17.9.11)	o 대북 유류 공급 제한(정유제품 연간 200만 배럴 상한 설정, 원유 현 수준 동결), 북한의 섬유 수출 금지 o 불법행위 의심 선박에 대한 공해상 검색 촉구(기국 동의 하), 대북 선박간 이전(ship to ship transfer) 금지 o 북한과의 합작사업 및 상업적 협력체 설립·유지·운영 금지 o 북한 해외노동자에 대한 노동허가 부여 금지 o 제재 대상(개인 1명, 단체 3개) 추가 지정
	결의 2397 (17.12.22)	o 대북 유류 공급 추가 제한(정유제품 연간 50만 배럴, 원유 연간 400만 배럴 상한 설정), 북한 수출입 금지 품목 확대 (농산물, 기계류, 전자기기, 목재류, 선박 등) o 불법행위 연루 의심선박에 대한 나포·검색·동결(억류) 조치 의무화(항구 입항시) 및 권한 부여(영해 내) o 24개월 내 북한 해외노동자 전원 송환 o 제재 대상(개인 16명, 단체 1개) 추가 지정
	결의 2407 (18.3.21)	o 전문가 패널 임무 2019.4.24까지 연장
	결의 2464 (19.4.10)	o 전문가 패널 임무 2020.4.24까지 연장
	결의 2515 (20.3.30)	o 전문가 패널 임무 2021.4.30까지 연장
	결의 2569 (21.3.26)	o 전문가 패널 임무 2022.4.30까지 연장
	결의 2627 (22.3.25)	o 전문가 패널 임무 2023.4.30까지 연장
	결의 2680 (23.3.23)	o 전문가 패널 임무 2024.4.30까지 연장

※ 자료: 외교부

참고4

「해양경비법」 제12조 및 제13조의 금지물품 종류

*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 등 의무이행을 위한 무역에 관한 특별조치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195호)

품 목		韓 HS 코드
광물	석탄(2371/8)	2701(석탄 및 석탄으로부터 제조한 연탄·마젤탄 등 고형연료)
	철(2371/8)	72(철강)
		73(철강의 제품)
	철광석(2371/8)	2601(철광과 그 정광)
	납(2371/10)	78(납과 그 제품)
	납광석(2371/10)	2607(연광과 그 정광)
	금(2270/30) · 은(2321/28)	2616(귀금속광과 그 정광(금·은 등의 광석 포함))
		7106(은(미가공, 반가공 형상 또는 분(粉)상의 것))
		7107(은을 입힌 비금속 / 반가공 이하의 것)
		7108(금(미가공, 반가공 형상 또는 분(粉)상의 것)
		7109(금을 입힌 비금속·은 / 반가공 이하의 것)
		7111(백금을 입힌 비금속·은·금 / 반가공 이하의 것)
		7114(금세공품, 은세공품과 이들의 부분품)
	동(2321/28)	74(구리와 그 제품)
	니켈(2321/28)	75(니켈과 그 제품)
	아연(2321/28)	79(아연과 그 제품)
	티타늄광(2270/30)	2614(티타늄과 그 정광)
	바나듐광(2270/30)	2615(니오븀광·탄탈륨광·바나듐광·지르코늄광 및 그 정광)
	희토류(2270/30)	2805(알칼리금속, 희토류금속, 스칸듐과 이트륨 및 수은)
		2846(희토류금속의 무기·유기화합물)
	토석류(2397/6)	25(소금, 황, 모래, 토석류 및 석고, 석회, 시멘트)
식료품 및 농산품(2397/6)		07(식용 채소, 구근)
		08(식용 과실, 견과류)
		12(종자와 과실, 공업·의약용 식물)
목재류(2397/6)		44(나무, 나무제품, 목탄)
기계류(2397/6)		84(원자로, 보일러와 기계류)
전기 기기(2397/6)		85(전기 기기, 음향·영상 설비 및 부분품)

품 목	韓 HS 코드
선박(2397/6)	89(선박과 수상구조물)
섬유(2375/16)	4015(고무제의 의류와 의류부속품)
	4203(가죽제 의류와 의류부속품)
	4303(모피의류 · 모피의류의 부속품 및 기타 모피제품)
	50(견)
	51(양모, 말의 털, 동물의 털로 만든 실과 직물)
	52(면)
	53(그 밖의 식물성 방직용 섬유)
	54(인조필라멘트, 인조방직용 섬유재료의 스트립 등)
	55(인조스테이플섬유)
	56(워딩 · 펠트 · 부직포 · 특수사, 끈 · 배의 밧줄 · 로프 · 케이블)
	57(양탄자류와 그 밖의 방직용 섬유로 만든 바닥깔개)
	58(특수직물, 레이스, 태피스트리, 트리밍, 자수천)
	59(침투 · 도포 · 피복 ·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
	60(메리야스 편물과 뜨개질 편물)
	61(의류 및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62(의류 및 부속품(메리야스 편물이나 뜨개질 편물 제외))
	63(제품으로 된 방직용 섬유의 그 밖의 물품, 세트 등)
	65(모자류와 그 부분품)
	7019(유리섬유 및 이들의 제품(실/직물))
해산물(2371/9)	03(어류, 갑각류, 연체동물과 그 밖의 수생 무척추동물)
	1504(어류 또는 해서포유동물의 유지와 그 분획물)
	1603(육 · 어류 · 갑각류 · 연체동물 등의 추출물 및 즙)
	1604(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어류 및 캐비어)
	1605(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갑각류 · 연체동물 등)
조형물(2321/29)	9703(오리지널 조각과 조상(재료 종류 불문))